

○ 言論·出版에 대한 許可·檢閲禁止

一 民正黨案

第20條. ②

言論·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閲과 集會·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다만,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는 映畵나 演藝에 대한 檢閲을 할 수 있다.

一 民主黨案

第21條. 第2項

言論·出版·映畵·演藝에 대한 許可·檢閲과 集會·結社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아니한다.

○ 言論·出版 및 集會·結社의 자유는 自由民主主義 政治의 生命線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國民의 정신적·정치적 自由의 전제가 되는 基本權이므로 이에 대한 本質的 侵害에 해당하는 言論·出版에 대한 許可·檢閱 및 集會·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를 헌법상 明文으로 규정하도록 함.

○ 다만, 映畵나 演藝는 民主主義 政治의 生命線이라는 일반적인 언론·출판과는 그 성질이 다소 다르고 현실적으로 公衆道德과 社會倫理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最少限의 범위내에서의 事前的 規制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다.